

전남 시·군 귀어·귀촌인 지원 정책 공통사업

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(용자)

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
- 귀어입인은 이주기간, 거주기간,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, 재촌 비어업인은 거주기간, 교육이수 실적,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
- 이주 기한** :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
 -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: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(2015년 1월 1일)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(단독 세대 가능)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(어선어업, 양식어업, 소금생산업, 자가 생산 수산물의 가공·유통업에 한 함) 및 어촌 비즈니스업에 경영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(다만,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)
 - 농어촌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: 사업대상자 선정 후 세대주(단독 세대 가능)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 및 어촌 비즈니스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(다만, 부부의 경우 1인만 지원 가능)
- 거주기간** :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. 단, 재촌비어업인은 사업신청일 현재 농어촌지역에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 있는 자
- 비어업기간** : 재촌비어업인은 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어업 경영 경험이 없는 경우 신청 가능함
- 교육이수 실적** :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 관련 교육을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(필수)

지원형태

창업자금

- 수산분야(어선어업, 양식어업, 소금생산업, 수산물 가공,유통업) 및 어촌비즈니스 분야(어촌관광, 해양수산레저)

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수산 분야
 - 양식장·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비(대출 집행 금액의 50% 이내)
 - 어선(허가어선은 1척에 한 함)·양식장·가공공장·염전 구입비
 - 양식장·어선·가공·염전 부대시설 신(증)축 및 시설 개보수비
 - 수산물 보관 및 판매 등 유통을 위한 시설 신(증)축 및 시설 개보수비
 - 종묘입식비(대출 집행 금액의 50% 이내)
 - 어선구입에 필요한 운영자금(어업허가, 어구 등 자재 구입)
- 어촌비즈니스 분야
 - 어촌체험 및 해양수산레저 체험시설 건축·구입·리모델링 비용
 - 「수산업법」 제2조 제19호에 따른 '유어'를 위한 창업자금
 - 기타 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등

주택마련 지원

- 주택의 매입, 신축, 리모델링(자기 소유의 노후 어가주택을 증·개축하는 경우 포함)

지원자금의 사용용도

- 대상지역 : 읍·면 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
- 대상주택 :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㎡ 이하

사업량/현재상태

- 용자100% 연리2%
- 5년 거주 10년 분할상환
 - 창업 :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
 - 주택 : 세대 당 75백만원 한도이내
 - 정부·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정책자금(용자)을 대출받은 경우, 시설성 대출잔액은 지원한도에서 차감

증빙서류

- 귀어·귀촌인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신청서
- 귀어업인 수산업 창업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
- 신용조사서(수협은행 발급)
- 가족관계증명서
-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등

청년어촌 정착지원

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
사업대상자

-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인(예정자 포함) 중 사·도지사(시·장·군수·구청장)가 자격·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으로 선정된 자
- ※ 사업대상자 선정 시 1순위 귀어업인, 2순위 후계어업경영인, 3순위 현지 거주 청년어업인, 4순위 어업창업예정자 순으로 함

지원대상

-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
 - ※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: 1980.1.1 ~ 2002.12.31. 출생자
- 어업경력기반 해당 시·군·구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
-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(예정자 포함)
-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
- 사업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어업인 2인 이상이 공동으로 「농어업경영체법」 제2조 제5호의 어업법인을 설립한 경우는 각각 사업대상자 신청 가능

지원형태

지원금의 사용 용도

- 어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으로 사용 가능
 - 1건당 사용금액은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
 - ※ 다만, 월별 지급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능
- 유휴, 사치품 구매, 일반 가계자금의 범위를 넘어선 과소비 등 사회통념상 문제가 되는 용도로는 사용하지서는 안됨

지원형태

- 지자체 보조 : 국고70%, 지방비30%, 일부 정액지원
- 민간 보조 : 국고 100% 정액지원

사업량/현재상태

- 지원기준 및 한도 :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
 - 1년차(2019.1.1 이후 등록자~2020년 예정자) : 월 100만원
 - 2년차(2018.1.1~12.31 등록자) : 월 90만원
 - 3년차(2017.1.1~12.31 등록자) : 월 80만원

증빙서류

- 사업신청서, 창업계획서
- 주민등록등본
- 가족관계등록부
- 신용조사서
- 어업경영체 등록증 등

전라남도 시·군 담당 연락처

순천시 061-749-4382	신안군 061-240-8413
목포시 061-270-8327	해남군 061-530-5673
광양시 061-797-3540	영암군 061-470-2195
진도군 061-540-3558	여수시 061-659-3906
영광군 061-350-5413	완도군 061-550-5101
함평군 061-320-1945	장흥군 061-860-5951
무안군 061-450-5612	고흥군 061-830-6848
보성군 061-850-5432	강진군 061-430-3267

전라남도 어촌계 가입조건

지역	어촌계	어촌계장	연락처	가입조건 및 현황
해남	사구	박상선	010-6612-7403	마을 거주 기간과 상관 없이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	상마	김병석	010-5767-4924	조건은 따로 없으며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	중마	김현식	010-3802-4741	마을에 3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	하마	김길용	010-4662-3538	조건은 따로 없으며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	땅골	박수남	010-3616-6206	마을에 3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고흥	영전·남전	김이권	010-3892-1662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마을에 6개월 이상 거주 후 어촌계 가입 가능. 가입비 70만원
	단장	박귀수	010-4642-9890	마을에 1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, 마을 가입비 30만원
	용동	이문희	010-9442-8346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어업을 종사하면서 마을에 1년 이상 거주 후 가입 가능
영광	우두	김상만	010-8609-8228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마을에 1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가입 가능
	하낙월	박영태	010-2315-6715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마을에 2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가입 가능
함평	설도	신찬균	010-8295-9535	수협조합원만 가능, 주소지는 영산 관내로 한정. 가입비 30만원
	구수·대신	박복이	010-8771-7860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마을에 6개월 이상 거주 후 어촌계 가입 가능
보성	석두	손홍주	010-2000-9619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마을에 3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가입 가능, 가입비 110만원
	군학	김성기	010-3610-5755	마을에 3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원 투표로 가입여부 판단. 가입비 천만원
	석간	오숙자	010-3604-1174	마을에 3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. 가입비 250만원
신안	객산	이종덕	010-3199-9222	마을에 1년 이상 거주 후 가입 가능. 가입비 1,200만원
	군봉	서금열	010-3123-0588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어선을 구입하고 어업활동을 한 자에 한해 가입 가능
	한운	김재광	010-5282-4430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장흥	수치	박지환	010-2291-1220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 준어촌계원으로 활동하고 마을 거주 2년 후 정식 어촌계원으로 가입 가능
	수문	김영만	010-8580-8620	마을에 1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임원회의를 거쳐 가입 가능. 가입비 200만원
	사금	백경중	010-2817-2791	마을에 전입한 자로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. 가입비 300만원
여수	신리	전선영(사무장)	010-2031-2201	마을에 6개월 이상 거주 후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. 가입비 150만원
	대리	김상철	010-9443-5126	조건은 따로 없으며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	안포	이희한	010-6690-2005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6개월 이상 마을 거주, 60일 이상 어업을 하여 소득이 있어야 함
	소경	박태수	010-7617-1160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2년 이상 마을 거주 후 가입 가능
	신흥	김정숙	010-3621-8943	조건 없이 어촌계 가입 가능하나 어장이 작아 어업권 부여 어려움
	동부	정채복	010-8892-1400	수협조합원이 되면 1달 안에 어촌계 가입 가능
	자매	김인준	010-3641-2959	조건 없이 어촌계 가입 가능. 가입비 100만원
	화태	박민호	010-3621-8945	수협조합에 가입하여 어업에 종사한 자로서 마을에 1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가입 가능
	미포	강남숙	010-4227-5670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마을에 1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가입 가능
	직원포	전상봉	010-5310-3112	수협조합에 가입하여 어업에 종사한 자로서 마을에 1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가입 가능
강진	장지	진홍섭	010-2302-9716	수협조합에 가입하여 어업에 종사한 자로서 마을에 1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가입 가능
	금봉	황규환	010-3643-1277	수협조합에 가입하여 어업에 종사한 자로서 마을에 1년 이상 거주 후 가입 가능. 가입금은 마을자산 비례 책정
	하저	황종렬	010-3605-3476	마을에 3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회원 투표로 가입 가능. 가입비는 마을자산 비례 책정
	서중	강남원	010-3556-4366	마을에 1년 이상 거주 후 가입 가능. 가입비 300만원
진도	백사	서석빈	010-3634-3079	마을로 주소 이전하고 가입비 200만원 납부하면 어촌계 가입 완료
	청룡	김주봉	010-2060-5479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1년마다 열리는 어촌계 총회에서 투표 후 가입 가능
	남선	김철오	010-4729-2143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1년 이상 거주 후 가입 가능
	가사	장영수	010-8868-5693	마을에 2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	돌목	김계석	010-6652-8212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마을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마을행사 참여. 거주 2년째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	용호	조태복	010-5397-8889	공동어장권을 취득하면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	하보전	한윤석	010-4607-2131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무안	울포	정승훈	010-9678-3008	조건은 따로 없으며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	송현	김종상	010-9396-1455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(수협가입비 160만원)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	서북	이완범	010-6626-1145	김 양식업을 하면서 마을에 3년 이상 거주 후 가입 가능
완도	삼두	양한청	010-3638-6058	조건은 따로 없고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. 발전기금 200만원 납부
	월송	김민수	010-3602-9981	어촌계 총회를 거쳐 바로 가입 가능. 가입금 50만원
	상정	김광희	010-6601-5976	마을 2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가입 가능. 가입금 450만원
	울포	정승훈	010-9678-3008	조건은 따로 없으며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	어두리	박상울	010-8322-9208	수협조합에 가입한 자로서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
순천	신리	양봉수	010-8611-3098	마을에 전입한 자로 어촌계 총회를 거쳐 가입 가능. 가입비 200만원
	외온	박성윤	010-3642-7668	수협조합에 가입하여 어업에 종사한 자로서 마을에 1년 이상 거주 후 어촌계 가입 가능

한눈에 보는 전남 지자체별 귀어귀촌인 지원정책

전남귀어귀촌지원센터
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제일은행빌딩 10층
Tel. 062-220-0581 Fax. 062-222-8005
www.jnbada.or.kr

한눈에 보는 전남 지자체별 귀어·귀촌인 지원 정책

지자체	사업명	지원대상 및 자격조건	지원형태	사업량/현재상태	증빙서류	담당 연락처
장흥군	귀어자 주택수리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어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장흥군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의 귀어인 (주소 전입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)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정부·지자체가 주관의 귀어교육 35시간 이수한 자 귀어자 중 영여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, 어업계 학교 졸업자, 후계 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는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주택수리비 : 주택구입(상속, 증여 포함) 또는 5년 이상 임대차 계약한 귀어인 	<p>도배, 장판, 지붕, 부엌 등 주택수리 내·외부 전반</p> <p>수산분야(어선어업, 양식어업, 가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) 창업 자금 ※ 양식장, 양어장, 어선, 가공시설 등 수산업 기반시설 (단, 시설부지 구입자금 제외) ※ 어선은 어업면허 취득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</p>	<p>8개소 - 세대당 5백만원(보조금 최고지원한도) ※ 5백만원 초과금액 자부담 처리 원칙 ※ 신청기한 : 2월 7일</p> <p>5개소 - 세대당 10백만원 ※ 총 사업비 3천만원 한도이며, 사업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50% 지원하되 2천만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처리 원칙 ※ 신청기한 : 2월 7일</p>	<p>공통서류 - 사업신청서 - 주민등록초본·등본 - 귀어 교육실적 등</p> <p>창업자금 - 귀어창업계획서 등</p> <p>주택수리비 - 수리계획서 등</p>	061-860-5951
	귀어자 창업 지원사업					
완도군	귀어가 정착지원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지역(읍·면지역 제외)에서 1년 이상 어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가족과 함께 관내 '농어촌지역'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업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·귀촌교육(이론)을 1일 이상(또는 7시간 이상) 이수한 자 또는 희망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타 민간단체 등에서 받은 일반 어업교육 실적도 포함 - 수산계 학교 출신자, 후계어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, 한국수산벤처대학 수료자는 귀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금액 : 가구당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정착지원금 또는 주택수리비지원 귀어 정착지원금은 어업 활동 영위를 위해 필요한 품목 및 정보통신 관련 기기(PC, 노트북 등) 구매가능 - 수리비는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 개량 등을 포함 주택수리비는 신청자의 경우, 주택을 임대 시에는 임대차계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체결한 경우에 지원 - 대출받아 구입한 주택에 대하여도 수리비 지원이 가능하나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음 	<p>21가구, 1억 5백만원 - 가구당 5백만원 ※ 신청기한 : 1월 31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신청서 - 사업이수증 - 가족관계등록부,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	061-550-5101
강진군	귀어자 정착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64세 이하 세대주가 전 가족과 함께 전입한 귀어세대 전입 일을 기준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어촌으로 이주한 자 위 지원 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강진군 귀어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할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선·어구 구입, 수산증·양식시설, 가공·유통시설, 생산기반시설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- 지원기준일 이후 구입 또는 시설하여 영위에 종사한 자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원 - 어선원부, 매매계약서, 어구 구입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 확인 	<p>2가구 - 가구당 4천만원 (보조 50%, 자부담 50%) ※ 신청기한 : 2월 14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귀어자 정착지원 사업신청서 - 귀어자 사업추진 계획서 등 	061-430-3267
고흥군	귀어자 청년 창업어장	<p>이주기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촌지역 거주 : 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,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(단독세대 가능)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실제 거주하면서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어촌 이외 지역 거주 :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세대주(단독세대 가능)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수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<p>거주기간 :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</p> <p>교육이수 실적 :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업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교육(이론)을 5일 이상(또는 35시간 이상) 이수한 자</p> <p>우선순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녀가 함께 이주하여(다자녀순) 45세이하 청년 귀어자 사업 신청 전에 실제 영여 및 어업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여 및 어업종사 경험자 수산계 학교 출신자 및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자 	<p>계약기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최고 5년까지 그 이후는 본인의 역량(초기 정착 발판 마련) - 행사계약은 해당 수협과 양식 어업권 행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은 2~3년 이내로 하며 연장 시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	<p>※ 20년도에는 포기자나 부적격자 발생 시 공모 모집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어장 지원신청서 - 어장 사업계획서 - 행사 계약확인서 등 	061-830-6848
여수시	귀어인 어업생산기반 지원사업	<p>사업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2017년 1월 이후 여수시 어촌지역으로 귀어하여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 <p>사업자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귀어 당시 만 20세 이상 만 64세 미만인 자로 전입 후 3개월 이상 거주자 귀어 관련 교육 5일 또는 35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※ 수산계 학교 졸업자, 어업인후계자 및 어업 경력 3개월 이상인 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 	<p>사업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선·어구·기자재 구입 및 종자입식 등 어업생산기반 비용 어가 당 20백만원(보조 10, 자담 10) 지원 	<p>2명, 40백만원(시비 50%, 자담 50%) ※ 신청기한 : 2월 20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업계획서, 가족관계증명서 - 주민등록초본(주소변동사항 포함) - 귀어교육수료증, 영여증빙서류 - 국민건강보험카드 등 	061-659-3906
	귀어인 정착금 지원사업		<p>사업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귀어정착금 360만원 지원(30만원*12개월 분할 지급) 	<p>8명, 29백만원(시비 100%) ※ 신청기한 : 2월 20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등록등본·초본 (주소 변동사항 포함) - 가족관계증명서, 국민건강보험카드 - 귀어귀촌교육수료증 등 	
신안군	귀어가 정착 장려금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(본인포함 3인 이상)과 함께 관내로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하여 1년 이상 어업에 종사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업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 교육(이론)을 5일 이상(또는 35시간 이상) 이수한 자 ※ 수산계 학교 출신자,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※ 교육 미 이수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	<p>지원제의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·지자체 및 정부 산하기관으로부터 타 정착자금(용자)을 대출받아 상환 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다만, 과거 정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자금을 상환한 어업인은 신청 가능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국세·지방세 체납자 ·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 <p>정착지원금의 사용제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술, 담배 등의 기호식품 및 일상용품(과자, 음료 등) · 면세유류 · 유흥업소, 노래방, 당구장 등 ※ 선지급 가능 항목 이외에는 지출이 발생하였음을 증빙(계약서, 세금계산서, 영수증 등)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정상 가능 	<p>10세대, 가구 당 3,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(보조금은 10개월간 분할지급) ※ 신청기한 : 3월 4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귀어가 정착장려금 지원 신청서 - 귀어가 정착장려금 사업계획서 - 주민등록등본·초본 등 ※ 접수처 : 해당 읍·면사무소 	061-240-8413
	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 업종에 종사하다가 관내로 전입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귀어인 어가주택 구입 또는 임대차 계약기간을 5년 이상 체결한 귀어인 수리지원 대상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도 지원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업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 교육(이론)을 5일 이상(또는 35시간 이상) 이수한 자 ※ 수산계 학교 출신자,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※ 교육 미 이수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	<p>지원제의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귀어귀촌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신속, 증·개축한 주택 ※ 주택구입 자금을 대출받아 구입한 주택은 신청 가능(신축은 지원받을 수 없음), 단, 현지조사를 통한 주택 상태 및 기 수리 여부 확인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주택 선 수리 후 신청한 경우 ·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 	<p>2개소, 가구 당 5,000천원 이내에서 수리비 일부지원 (대상 어가는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5,500천원이상 수리 원칙) ※ 신청기한 : 3월 4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귀어인 어가주택 수리비지원사업 신청서 - 어가주택수리 계획서 - 주민등록등본·초본 등 ※ 접수처 : 해당 읍·면사무소 	
	신규어업인 현직유화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 업종에 종사하다가 관내로 전입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귀어인 최근 5년 이내에 해양수산업 및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귀어귀촌 교육(이론)을 5일 이상(또는 35시간 이상) 이수한 자 ※ 수산계 학교 출신자,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된 자는 귀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※ 교육 미 이수시 신청자 심사기준 교육이수 점수에는 반영되지 않음 	<p>지원제의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기존 거주세대(직계존비속)전입 시 지원 불가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국세·지방세 체납자 ·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 	<p>20세대, 세대 당 500천원 이내에서 지원 (추가 경비는 본인 부담) ※ 신청기한 : 3월 4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신규어업인 현직유화 지원사업 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가족관계증명서 등 ※ 접수처 : 해당 읍·면사무소 	
	귀어인 이사비 지원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관내로 전입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귀어인 ※ 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어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수산식품 가공·제조업 및 어촌 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자 신안군 전입 후 1년 이내 귀어인으로써 2인 이상 가구의 세대가 관내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이사를 완료한 세대주 ※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이전을 한 후 배우자가 1년 이내 이전하여 세대를 합한 경우에는 인정(신청은 세대주 명의로 가능), 부모와 자녀, 동거인의 세대합가는 대상에서 제외 	<p>지원제의 대상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하였다가 다시 농어촌으로 전입한 자 기존 거주세대(직계존비속) 전입시 지원 불가 사업신청일 기준 어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국세·지방세 체납자 ·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 	<p>10세대, 세대당 1,000천원 이내에서 지원 (추가 경비는 본인 부담) ※ 신청기한 : 3월 4일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귀어인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서 - 사업계획서 - 주민등록 등·초본(주소 변경이력 포함) - 가족관계증명서 ※ 접수처 : 해당 읍·면사무소 	

※ 지원정책은 시기 및 사·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